

* 해당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문을 수정할 권한은 **BIYN** 성평등팀과 임원진에게 있습니다.

들어가며

1. BIYN 성평등 약속문

2. 조직 구성

성평등팀(상시)

3. 회원 활동에서의 성평등 장치(상시)

(1) 사전 장치

(2) 활동 현장에서의 사전 조치

(1) 체크리스트/동의서

(2) BIYN 성평등 약속문 낭독

(3) 온라인 폭력 관련 참고 자료

4.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성폭력사건처리 기구

제1절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제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레퍼런스

1. 사전 워크숍

2. 성평등 장치 및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들어가며

<느슨한 조직을 위한 성평등 장치 ver 1.0>은 조직 내 페미니즘 실천, 성폭력 사건의 사전예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개월간 BIYN 회원 신아와 BIYN 운영위원 주연을 중심으로 회원과 2017년 하반기 BIYN 운영위원회가 참여하여 자료조사-회원 워크숍(2017년 10월 13회 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 BIYN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평등 규약'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있던 해당 프로젝트는 모든 BIYN 구성원을 위한 1) 페미니즘 약속문, 실무진을 위한 2) 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 활동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 체크리스트와 동의서 구현 등으로 보다 세분되었습니다. 더하여 상시 성평등팀을 구성하여 ver 1.0 보완/갱신, 해당 장치가 조직 내에서 유효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교육과 워크숍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BIYN처럼 ‘느슨한’, ‘작은’, ‘유동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을 겸하는’ 성격을 갖는 조직에서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활동 경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다른 조직과 개인들에게 참조/확장되기를 바랍니다.

1. BIYN 성평등 약속문

BIYN 활동의 주체가 숙지하고 지켜나갈 성평등 약속문을 공유하고 모든 자리에서 함께 실천합니다.

1. 조건 없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동료 시민에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2. 기본소득을 지지하여 모인 BIYN 회원을 아울러 BIYN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BIYN의 활동 주체이다.
3. 위 주체들은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학력 등과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4. BIYN 활동에 참여하는 모두는 상호 높임말을 사용한다.
5. BIYN은 성차별, 성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별 고정관념 강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적 대상화,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성역할을 고정하는 발언, 소수자를 배제하는 발언, 외모, 학력, 나이에 대한 발언에 반대한다.
6. BIYN의 활동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을 때 누구나 경고하고 제지하여 혐오 발언의 발화자에게 즉시 인지시킬 수 있다.
7. BIYN은 성평등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성평등 팀의 전담 하에 공동의 문제로 대처한다.
8. BIYN의 운영위원회와 프로젝트팀(활동 단위 모두)은 행사 조직 및 프로젝트 기획 시 최대한 다양한 구성원의 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9. BIYN은 성평등한 문화를 위해 지속해서 대화하고 학습해나간다.
10. BIYN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모임이 시작될 때 다 함께 이 약속문을 숙지한다.

약속은 깨질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이상을 더욱 유념하며, 약속문을 모든 BIYN 활동과 행사에서 함께 실천합니다.

2. 조직 구성

BIYN은 위의 약속문과 규약을 조직 내에서 실천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상시로 운영, 활동하는 성평등팀(가)을 구성합니다.

성평등팀(상시)

(구성 및 운영)

1. 임기는 6개월이며, 내부 혹은 외부의 교육프로그램 활용하여 팀 당 최소 1인은 의무적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BIYN은 성평등팀의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지원해야 하며, 임기 동안 활동비를 지급한다.
2. 성평등팀은 상시로 운영되고 최소 3인(선임 1, 선출 2) 이상이 활동하며 운영위원회와 겸직을 할 수 있다.
3. 성평등팀은 성폭력 사건 처리를 비롯한 성평등 문화 정착 활동 제반에 있어, BIYN 및 회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자문 및 도움을 받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약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업무)

1. 기본소득과 성평등/여성/젠더 이슈와 관련된 활동
2.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련한 지원과 연계
3.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4.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구성과 조사사항 보고/이관
5.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 실행
6.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 기록·보존
7. BIYN의 페미니즘 약속문과 성평등 규약의 지속적인 활용 및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8.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9.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

(예산)

1. BIYN은 매 분기 성평등 사업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며 성평등 팀은 이 예산을 연구, 교육 등의 사업과 자료 구매 및 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한다.

3. 회원 활동에서의 성평등 장치(상시)

(1) 사전 장치

1. 성평등 약속문: 약속문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BIYN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2. 성평등 워크숍: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진행된다.
3. 프로젝트팀 내 성평등 역량 강화: 프로젝트팀에서는 최소 1명 이상 성평등 워크숍을 이수해야 한다.
4. 프로젝트 및 회의, 모임을 시작하기 전 그 자리에서 페미니즘 약속문과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함께 숙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활동 현장에서의 사전 조치

다양한 개인이 모이는 활동 현장에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겼을 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 체크리스트/동의서

- 체크리스트/동의서는 **BIYN**의 페미니즘 약속문에 기반을 두어 보다 현장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 온라인: 참여 공지 메일 등에서, 참여 신청 서식에 약속문과 동의 여부 상시 붙임
- 오프라인: 모임 시작 시 성평등 약속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체크리스트 배부, 체크
- → 온/오프라인의 경우 모두 동의(체크)하지 않으면 활동 참여 불가
- 체크리스트/동의서에는 성평등 약속문, 성폭력 처리규정 링크를 첨부한다.
- 활동이 끝나거나 행사를 마친 뒤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활동을 회고한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모임을 위한 사전 동의 체크리스트(안)

- 아래 항목들을 읽고 동의의 의미로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가장 아래에는 서명해주세요.

- 기본적으로 상호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주의합니다.
- 타인이 발언 중일 때는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 누군가가 발언권을 너무 주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개인의 성별, 나이, 외모, 학력, 장애 여부,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을 시 제지하거나 지적합니다.
-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성평등을 훼손하거나 특정 성별, 나이, 외모, 학력, 장애 여부,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격이나 혐오를 담고 있지는 않나요?
- 활동 팀 내 구성원 성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 활동 팀 내에서 최소 1명 이상 페미니즘 워크숍에 참여했나요?

본인 ()은 BIYN의 ()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위의 체크리스트에 동의하며 이를 인지하고 활동함을 약속합니다.

2018.0.0. (이 름)

* 위의 체크리스트는 조직 내 성평등을 보장하여 회원들이 제약 없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BIYN 성평등팀과 BIYN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 BIYN 성평등 약속문 더 보기 : (링크)
- BIYN 성평등 처리규정 더 보기 : (링크)

BIYN 성평등팀 | BIYN 운영위원회

성평등하고 안전한 모임을 위한 회고용 체크리스트(안)

아래 항목을 체크하고 돌아가면서 짧게 이야기합니다.

- 외모와 관련한 평가나 농담이 있었는가?
-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인 반말을 한 경우가 있었는가?
- 소수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농담 거리로 격하한 경우가 있었는가?

- 성차별적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가?
 - 다른 사람의 발언을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경우가 있었는가?
 -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침묵하지는 않았는가?
 - 성평등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을 때 즉각 제재가 이루어졌는가?
- * 불쾌함이 있었을 경우 익명으로 sec@biyn.kr, (성평등팀 이메일) 에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BIYN 성평등팀 | BIYN 운영위원회

(2) BIYN 성평등 약속문 낭독

- 모든 모임/활동 자리에서 낭독한다.

(3) 온라인 폭력 관련 참고 자료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B0&cate2=&page=1&idx=224>
- WMC Speech Project, “Online Abuse 101”
<http://www.womensmediacenter.com/speech-project/online-abuse-101>

- WMC의 스피치 프로젝트에서 정의하는 온라인 젠더 폭력 :

‘온라인 폭력은 실제 사람 혹은 가상의 인격을 수치스럽고 잔악하게 묘사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부터, 신상정보 유출, 스토킹과 온라인 사찰, 동의 없는 사진의 사용과 폭력적인 협박까지로 범주할 수 있으며, 이와 관한 악의적 행동과 공격적인 방법까지도 포괄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괴롭힘은 종종 사이버 성차별이나 사이버 여성혐오로 불리며, 이는 성인 여성과 미성년 여성들을 특정 타겟으로 하여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각각 성차별/인종차별/종교에 대한 편견/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가 부분적으로 해당되기도 합니다.

폭력의 영향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괴롭힘의 목적에는 일반적으로 창피 주기/모멸감 주기/공포감 형성하기/협박하기/입막음하기/갈취하기/악플 공격 부추기기/악의적인 키보드 배틀 벌이기에 대한 욕구가 포함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10#0000>

4.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BIYN의 모든 구성원이 성적으로 존엄하고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 ②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다음의 상황에 해당한다.
 1. 상대방의 적극적 합의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 합의의 정의는 최소한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하여야 함 (2) 언어적 또는 물리적 저항이 없거나, 위협 또는 힘의 사용에 굴복한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3) 상대방의 옷차림은 동의의 의사 표현이 아님 (4) 과거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미래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님 (5) 한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기로 동의한 것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님 (6) 개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7) 개인이 그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황상 의식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함. (<단 하나의 기준-적극적 합의>에서 발췌)
 2.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3.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 및 요구를 하고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행위
 4.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BIYN 회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할 때에는 피신고인과 피해자가 회원이 아니더라도 활동상 발생한 성폭력 사건도 적용된다.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거나, 당사자의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개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성폭력사건처리 기구

제1절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제1절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제4조(기구)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성평등팀과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둔다. 성평등팀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며 그에 따른다.

제5조(설치) 성평등팀은 사건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구성)

- ① 대책위원회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하며, 성평등 팀원 1인 이상 2인 이하, 외부위원 2인 이상, 활동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 ② 대책위원회 구성 시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③ 대책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성폭력 사안 처리 전문가, 법률 및 상담 전문가, 인권 문제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④ 재조사 및 재심의할 경우 위원회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역할)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
- ② 가해자 징계 및 후속 조치 권고
- ③ 피해자 보호
- ④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권고

제8조(의무와 태도)

- ① 사건처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피해자 관점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의 조사와 결정 권한을 피해자에게 이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공론화’나 ‘공식적 해결’만을 올바른 해결로 생각하지 않는다.
- ④ 충분한 조사 없이 가해자의 탈퇴, 제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제9조 대책위원회는 필요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다음의 상황에 해당할 시 대책위원회의 위원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① 대책위원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
- ② 대책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 ③ 대책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④ 성평등팀에서 사건 피해자의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

제11조(대책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위 10조의 사유에 해당하면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대책위원의 교체) 성평등팀은 대책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기간) 대책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사가 종료될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에 대해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비용) BIYN은 대책위원에게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15조(신고)

- 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해당 성평등팀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제16조(신고의 각하)

- ① 성평등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각하한다.
 - 1. 신고인이 제15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3. 제15조제2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성평등팀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즉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조치) 성평등팀은 신고 후 다음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에 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회원, 사업 담당자, 기타 구성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①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 ② 피해자의 주거, 활동공간(온/오프라인)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 ③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 ① 성평등팀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성평등팀은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성평등팀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성평등팀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⑥ 성평등팀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대책위원회의 회의)

- ① 대책위원회의 회의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 ② 성평등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③ 대책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21조(신고의 기각)

- ① 대책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기각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조사 결과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성평등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당사자 간 해결)

-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성평등팀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성평등팀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5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조정절차)

- ① 성평등팀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② 성평등팀은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25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 ④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구제조치 등)

- ① 성평등팀은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③ 성평등팀은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성폭력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즉시 성평등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요청)

- ① 성평등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BIYN의 임원단과 협의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1.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회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7조 또는 제25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5. 누구라도 성평등팀 및 대책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 ② 다음의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제명
2. 활동중지
3. 가해자 교육 이수
4.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
5. 사과문 작성

제27조(당사자의 권리)

- ① 당사자는 성평등팀이나 대책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8조(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평등팀과 대책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9조(비밀유지)

- ① 성평등팀과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성평등팀과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성평등팀 및 대책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후속 조치) 성평등팀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다음의 후속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 ①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 ②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시행
- ③ 조직 문화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자문
- ④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부록- 피해자의 권리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성정체성, 신체적 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 지지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자도 피해입기를 원했거나 피해를 당할만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부터 살아나온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현장을 채택함은 더 이상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일상적 권리

- 1.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 1.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1.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1.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1.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1.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1.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1.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권리

1.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 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1.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1.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1. 고소 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1.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1.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1. 사생활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1.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1.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진료과정에서의 권리

1.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1.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받을 권리
1. 모든 검사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1. 진료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1.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1. 성폭력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1.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 98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성폭력 생존자 권리헌장을 일부 발췌)

레퍼런스

1. 사전 워크숍

1. 지금 시작하는 젠더 감수성(2013)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B0&cate2=A02&page=1&idx=96>

2. 성평등 장치 및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http://hrc.snu.ac.kr/rule>
2. 연세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http://equity.yonsei.ac.kr/helper/ys_rules.htm
3. 녹색당 당내 평등문화 약속문과 매뉴얼
http://www.kgreens.org/?kboard_content_redirect=123
4.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2017)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B0&cate2=A01&page=1&idx=216>
5. 사건지원자를 위한 가이드- 나침반을 찾아라(2008)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B0&cate2=A05&page=1&idx=8>
6. 성폭력 생존자 권리헌장
<http://equity.yonsei.ac.kr/helper/%EC%84%B1%ED%8F%AD%EB%A0%A5%EC%83%9D%EC%A1%B4%EC%9E%90%EA%B6%8C%EB%A6%AC%ED%97%8C%EC%9E%A5.htm>